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434
----------	-------

발의연월일 : 2025. 12. 19.

발 의 자 : 박충권 · 박준태 · 서천호
김정재 · 김성원 · 김상훈
조정훈 · 유상범 · 김민전
이만희 · 백종현 · 김도읍
박수영 · 엄태영 · 강명구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든 차의 운전자가 터널 안 및 다리 위, 도로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등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그 위반자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거나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최근 도로에서 노외주차장의 입·출구나 건물 부설주차장의 입·출구로 이어지는 길목을 막아 시민들의 불편을 끼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노외·부설주차장의 입·출구를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차금지 장소에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입·출구를 추가함으로써 교통상의 장애요소를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주차장법」 제1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입·출구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p> <p>1. (생략)</p> <p><u><신설></u></p> <p>2.·3. (생략)</p>	<p>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 ----- ----- -----.</p> <p>1. (현행과 같음)</p> <p><u>1의2. 「주차장법」 제1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입·출구</u></p> <p>2.·3. (현행과 같음)</p>